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90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엄셋별 의원

1.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 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 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다.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 지원한도율을 규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2. 5. ~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지원사업란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지원사업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7.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7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 바. (생략)</p> <p><u><신 설></u></p> <p> <u>사.</u> (생략)</p> <p>2. (생략)</p> <p><u><신 설></u></p> <p> <u>② ~ ④</u>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등) ① ----- ----- ----- ----- -----.</p> <p>1. ----- -----.</p> <p> 가. ~ 바. (현행과 같음)</p> <p> <u>사.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u> <u>안.</u> (현행 사목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u>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4조 제1항 관련)</p> <p>1. 지원비율</p> <p>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사 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 지원 한도율 (%)</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6.(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body> </table> <p>※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p>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	비고 (증감률)	1. ~ 6.(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생 략)	<p>[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4조 제1항 관련)</p> <p>1. 지원비율</p> <p>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사 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 지원 한도율 (%)</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6.(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 (현행 제7호와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 제7호와 같음)</td> </tr> </tbody> </table> <p>※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p>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	비고 (증감률)	1. ~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70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 제7호와 같음)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	비고 (증감률)																			
1. ~ 6.(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생 략)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	비고 (증감률)																			
1. ~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70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2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0.14., 2022.11.14.>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11.14., 2023.12.29.>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보행시설물(계단, 다리 등)의 설치·유지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마.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경로당의 유지보수

나.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다.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마.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바.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의 보수

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자.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카.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파.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 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개선사업
- 너.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 더.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 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개선사업
- 머. 외벽 보수(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 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4.>

[본조신설 2016.10.14.]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 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

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5명 이내

2. 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법률, 회계, 공동체, 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6명 이내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1.14., 2023.12.29.>

제15조 삭제 <2023.12.29.>

부 칙 (제448호, 2005.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650호, 2011.01.0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5호, 201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7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0호, 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2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04.10., 2023.12.29.>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 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보행시설물(계단, 다리 등)의 설치·유지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 ~ 2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4.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 60㎡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 증액
6.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지원 한도율 (%)	비 고(증감률)
1. 경로당의 유지보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 ~ 20%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 60㎡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60	
3.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60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예산범 위 내	
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6.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의 보수	50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9.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50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50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50	
13.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50	
14.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50	
15.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개선사업	50	
16.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50	
17.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50	
18.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개선사업	50	
19. 외벽 보수(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50	
2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 점
정량 평가 (60)	준공연수(15)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5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2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9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6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3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12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9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6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3	
단지 규모(15)	· 150세대 미만	15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2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9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	
	· 1,000세대 이상	3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15)	· 5년간 지원내역 없음	15	
	· 1회 지원	12	
	· 2회 지원	9	
	· 3회 지원	6	
	· 4회 지원	3	
정성 평가 (40)	긴급성(15)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5 중 10 하 5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5 중 10 하 5
	필요성(15)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 등	상 15 중 10 하 5
감 점		· 민원 발생, 실태조사 지적, 지원사업 이행 미비 등	-50이내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비고
증 감 률	110%	105%	100%	90%	80%	70%	60%	50%	-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 제2호의 평가점수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억원(전체사업비)×70%(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110%(평가점수 증액 10%)=9천3백1십7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 제2호의 평가점수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도로 및 하수도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60%(구분담률)×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110%(평가점수 증액 10%) = 7천2백6십만원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라.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